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25496(본소), 2023가단20955(반소)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의 배당액 1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A의 배당액 94,531,734원을 134,932,795원으로, 원고(반소피고) B의 배당액 39,531,061원을 119,13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①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② 예비적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배당액 1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의 배당액 94,531,734원을 179,147,365원으로, 원고 B의 배당액 39,531,061원을 74,915,430원으로 각 경정한다.

반소 :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 별지 목록 기재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2020. 11. 7.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그 사업장이 충북개발공사 시행의 F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이전보상비 228,562,500원 및 휴업보상비 25,513,000원 합계 254,075,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비'라 한다)의 보상비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1.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보상비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0. 11. 9.

충북개발공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서가 충북개발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기계인 함마, 파쇄기, 디스크선별기, 콘베어벨트, 자석벨트에 대하여 채권액 120,000,000원의 동산담보권을 보유한 담보물권자로서 2021. 6. 23. 담보목적물 수용에 따른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보상비 채권 중 1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타채720)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7. 1. 충북개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비 전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금594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원고 A은 원금 160,000,000원 및 이자 124,878,904원을, 원고 B은 원금 119,130,000원을 각 배당요구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8. 31.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원고 A에게 94,531,734원을, 원고 B에게 39,531,0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2. 8. 31.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A은 피고의 배당액 중 40,401,001원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의 배당액 중 79,598,939원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각 가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비는 피고의 담보목적물 멸실로 인한 보상비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외 회사의 공장이전에 수반하는 이전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로서, 피고의 물상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이의한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상비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위 취소에 따라 원고들의 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고들은 배당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배당이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제척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직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취소원인과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소외 회사 소유의 동산들이 동산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위 동산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51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6,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며, 달리 위 담보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A이 피고의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 피고의 동산담보권 목적물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등기를 마친 담보물권자로서 원고 A에 우선하므로, 피고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충북개발공사가 공탁한 금원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 충북개발공사 시행의 F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이고, 피고의 동산담보권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보상비가 아니므로, 동산담보권자인 피고가 물상대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120,000,000원은 이 사건 보상비 채권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그 배당금액은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에 이의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12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 A의 배당액 94,531,734원은 134,932,795원으로, 원고 B의 배당액 39,531,061원은 119,13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